

「2026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경상북도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를 하오니, 특구 지정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 사업목적 :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규제자유특구의 안전실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LSV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및 지역 내 전후방 산업생태계 육성

- 지원대상 :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2 공고개요

- 공 고 명 : 경상북도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사업 재정지원사업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9. 4. (18시 접수 마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 이내
- 지원규모 : 총**2,566,000,000**원 (이십오억육천육백만원) *2차 공고 지원규모 약537,971,000원
- 접수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내 해당 사업공고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분야 확인 必(본문 2p '세부 주요프로그램 안내' 표 참조)**

담당자	글로벌혁신특구TFT	안소희 책임연구원	연락처	054-339-0902
E-mail	ash1019@gbtp.or.kr			
주 소	(38822) 경상북도 영천시 양호길 55			

3 지원내용

○ 책임보험

- 경상북도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정사업자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

* 선정기업 1개사당 (국비+지방비)기준 최대 6,300천원 지원(사업비 비율 국비 70 : 지방비 20 : 민간부담금 10)

*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필수 매칭(국비 최대 금액 기준 700천원 이상 매칭 필수)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 해외 실증 기관/기업과의 협업 통한 거점 구축 및 실증 공간 제공, 해외 실증 지원
- LSV 세부 안전기준 부재에 따른 자가인증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상용화 실증 지원
- (실증대상#1)수요특화 다품종 소량 비즈니스 모듈 상용화 실증, (실증대상#2) 다목적 베이스 플랫폼 상용화 실증 → 안전기준 충족 실물 시험 입증 및 모듈형 LSV 특징에 맞도록 상용화 실증 지원(수출형 모델)

* 선정기업 1개사당 국비기준 최대 238백만원 지원(사업비 비율 국비 70 : 지방비 20 : 민간부담금 10)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10% 이상 필수 매칭(국비 최대 금액 기준 34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견기업 50%이상, 중소기업 30% 이며 수행기관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 완료 必

○ 세부 주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지원분야	주요내용	지원규모(천원)
책임보험	보험지원	-실증특례 및 지역특구법 제88조2항, 제90조제14항에 의거하여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최대 7,000천원
현지실증	현지실증	-현지 기관·기업과 해외 실증 사이트 구축을 통한 현지 실증 지원	
해외인증	인증	-UL(美), BV(佛), TÜV(獨), CE 등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인증에 필요한 성능시험(Test), SW 정적·동적 분석 비용,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문서 작성, 인증서 신청 및 발행비 등) -글로벌 인증기관과 현지인력, 장비 인프라 활용 및 인증취득 사전 검토	최대 기업당 3.4억/년

※ 프로그램별 지원 사업비 : 국비 최대 70%, 지방비 최대 20%, 민간부담금 10% 이상(필수)

※ 지원금은 프로그램별 결과물을 포함하여 총괄주관기관 검수 후, 사업비지급

※ 실증별 사업계획 내용과 중복된 내용 지원 불가

※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홈페이지(www.gbtp.or.kr) 내 접수 신청 시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분야 체크 필수

4 지원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경북테크노파크	'26. 9. 초
검토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26. 9. 중
결과통보 및 협약 (재정지원)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	'26. 9. 말
재정지원사업 수행	2차 특구사업 수혜기업	'26. 9. ~
진도점검 및 모니터링	경북테크노파크	'25. 10.
완료보고서 검수 * 결과물 포함	경북테크노파크	~ '26. 11. 30.
결과평가 및 지원금 사용 검토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자체)	'26. 12.

※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신산업 책임보험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시,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지원 사업에서 특구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예산 잔액 발생 시 1차 재정지원사업 수행 이후 후보군 선정 평가 위원회 수행 가능. 상기 추진일정 참조)

5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경북지역「경북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②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③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사전 지원제외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경북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가 아닌 경우
- ②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및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 ③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④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⑤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⑥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② 민간부담금(10%이상) 현금 매칭 필수이며,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신청기업 부담
- ③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음
- ④ 기업부담금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 ⑤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⑥ 수혜기업은 총괄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⑦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제출서류(필수)

구분	순번	서류명	제출부수
책임보험	1	(서식1)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1
	2	(증빙1)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책임보험 증권 등) (보험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전자우편 등의 자료)	1
	3	(증빙2)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1
	4	(증빙3)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1
	5	통장사본	1
현지실증, 해외인증	1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1
	2	(서식1-별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3	(서식2) 상세사업계획서	1
	4	(서식3) 기업부담금 납입 확인서	1
	5	(서식4) 기업·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
	6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7	(서식6)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인서	1
	8	사업자등록증	1
	9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도 23~25년)	1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참고]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 점
지원 부합성	○ 본 글로벌 특구 목적과의 부합성	15
실증(인증) 목표	○ 실증(인증)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방안	15
실증(인증) 내용	○ 실증(인증) 내용(계획)의 적절성 -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등	40
실증(인증) 결과	○ 지원에 따른 개발 기술(제품)의 우수성	15
실증(인증) 성과	○ 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15
합계		100

[참고] 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

○ 사업비 지원 가능 비용

- 사업비는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가입, 글로벌 진출(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작성 시, 보조세목을 기준으로 작성

보조세목	내용
보수, 일용임금 등	• (인건비)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 ※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료)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가입 보험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 (여비·체제비)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재료비 등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도구, 데이터 등 구입비
일반 수용비 등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
일반용역비 등	• (외주용역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등	•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통역비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자본적 경비제외)
임차료	• (임차료)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및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불가	•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시설비·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특근매식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등)